(사)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Bio-Environment Control

54538)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대로 460 원광대학교 농식품융합대학 5층 전화: 063-850-7365
홈페이지: www.ksbec.kr E-mail: ksbec@hanmail.net 학회장: 조영열 사무총장: 홍세운 사무국장: 강명선

문서번호 생환 25-10
시행일자 2025. 09. .
수 신 회원 제위
제 목 (사)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제18대 학회장 선거 공고

---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제 17대 학회장 임기가 2025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사)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18대 회장 선거를 정관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임원선출규정 제4조(차기회장의 선출)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제18대 학회장 선거 공고문 1부.
2. 정관 1부.
3. 임원 선출규정 1부. 끝.

(사)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제18대 학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오 욱 (직인생략)

붙임 1]

(사)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제18대 학회장 선거 공고

(사)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정관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임원선출규정 제4조(차기회장의 선출)에 의거하여 제18대 학회장(임기: 2026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선거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선거 방법

◦ 선출 근거: **정관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임원선출규정 제4조(차기회장의 선출)**

◦ 투표 방법: 1인 1기표 직접투표(전자투표)

◦ 선출 방법

- 최다 득표자 선출
-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 선출
-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투표 없이 당선자로 확정

◦ 피선거인: 최근 6년 이내에, 본 학회의 정회원이며 부회장을 역임한 자

- **입후보자는 입후보 소견서(향후 학회 활동 계획 등이 명시된 A4 1매 내외, 별도 양식 없음)를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선거인: 본 학회의 현 임원(회장, 부회장, 운영이사, 이사)

2. 선거 일정

◦ 학회장 선거 공고: 2025. 9. 22.~10. 9.

◦ 선거인 및 피선거인 명부 열람: 2025. 9. 22.~10. 22.

◦ 후보자 등록(입후보 소견서 제출): 2025. 10. 10. ~ 10. 22.

◦ 후보자 등록현황 공고: 2025. 10. 23.(학회 홈페이지)

◦ 투표 공고: 2025. 10. 27. ~ 11. 1.

◦ 투표 실시: 2025. 11. 3.~ 11. 4.

◦ 개표 및 당선자 확정: 2025. 11. 5.(단독 후보의 경우, 투표 없이 10월 23일 확정)

◦ 총회 보고: 2025. 11. 7.(임시총회)

3. 선거인 및 피선거인 명부 열람, 개인정보 수정

◦ 열람 기간: 2025. 9. 22. ~ 10. 22.

◦ 열람 장소: 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첨부파일_선거인 및 피선거인 명부)

◦ 선거인 및 피선거인 개인정보 확인

- **전자투표를 실시함에 따라 휴대 전화번호로 선거인 인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휴대전화가 변경된 회원은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에 **휴대 전화번호를 학회 홈페이지 회원정보에서 수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선거인 명부의 오기, 누락 등 문제점 발견 시 사무국으로 연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Tel: 063-850-7365, E-mail: ksbec@hanmail.net)

2025. 09. 22.

(사)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제18대 학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오 욱 (직인생략)

※ 18대 학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오 욱(제주대)
위 원: 홍세운(전남대, 사무총장)
이준구(전북대)
서현권(세종대)
황승재(경상국립대)

붙임 2]

사단법인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정관

2016.12.20. 제정
2018.10.17. 개정
2018.11.20. 개정
2020.01.14. 개정
2022.04.26. 개정
2023.09.22. 개정
2024.04.26.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어 명칭은 'The Korean Society for Bio-Environment Control'로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생물환경조절 분야와 관련된 생육조절, 환경조절, 생산시설, 생산물 이용에 관한 연구 및 그 지식보급과 관련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학회지의 발행 및 출판물의 간행
2. 학술발표회 간담회의 개최
3. 국내외 학술 교류
4. 학회상 시상
5. 외부 연구용역 사업(과제) 수행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원광대학교 농식품융합대학 5층(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460) 내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5조(종류 및 자격)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정회원, 학생회원, 명예회원, 단체회원, 구독회원 및 종신회원으로 구분하고,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 회 원: 본회의 취지와 관련된 분야의 종사자
2. 학생회원: 본회의 취지와 관련된 학과의 재학생
3. 명예회원: 학술발전에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
4. 단체회원: 본회의 취지 및 목적에 찬동하는 기업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
5. 구독회원: 본 학회지의 정기구독을 원하는 학교, 도서관, 연구소 및 기타 학술단체
6. 종신회원: 본회 정회원으로 본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

제6조(회비) 각 회원은 학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납부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단, 명예회원, 종신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제7조(제명) 회원으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회칙을 위반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2.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제8조(입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탈회) 탈회를 원하는 자는 탈퇴 시까지의 회비를 완납한 후 그 취지를 본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회비의 반환) 탈회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납부한 회비의 반환을 요구하지 못한다.

제3장 임원 및 감사

제11조(임원의 종류) 본회는 회장 1인, 부회장 10인 이내, 사무총장 1인, 운영이사 30인 이내, 이사 3인 이상 100인 이내를 둔다.

제12조(임원의 선임)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선임한다.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 의결로 그 직을 정지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본회는 임원 선임에 제한을 둘 수 있다.
②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사무총장)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둘 수 있다. 사무총장은 운영이사 중에서 1인을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본회 운영, 학술 활동 등에 대해 회장을 보좌한다.
③ 운영이사는 회장단을 보좌하여 학회 업무를 수행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사무총장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지정한 사업 및 기타 회무를 수행한다.

제18조(감사)
① 감사는 임원이 아닌 정회원에서 2인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 후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감사는 매 사업연도에 1회 이상 본회의 재산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2. 제1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
3. 제1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4.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

제4장 회 의

제19조(종류)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한다.
1.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2. 이사회 3. 운영이사회
제20조(총회)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정기총회는 매년 상반기 중에 개최하며, 회의 1주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공문을 전달하여야 한다. 또한 임시총회는 회장, 감사 혹은 10인 이상의 이사의 요구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1. 총회 의사 및 의결의 정족수
가. 회의는 회원 1/10 이상의 출석이 없으면 개최하지 못한다.

나.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서면에 의한 표결 및 표결의 위임
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정회원 또는 이사는 사전에 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표결할 수 있다.
나. 표결을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총회 의결사항
가. 정관의 변경
나. 감사의 선출
다.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라. 기타 주요 사항

제21조(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 편집위원장, 운영이사, 및 이사로 구성된다.
1. 이사회 의사 및 의결 정족수
가. 회장 및 이사회 재적인원의 1/5 이상이 소집되어야 한다.
나. 이사회는 재적인원 1/5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 의결사항
가. 회원 자격 승인 및 제명에 관한 사항
나. 임원의 선출 및 해임
다. 각 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장과 위원 소속에 관한 사항
라.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사항

제22조(운영이사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운영이사로 구성되며, 이사회의 부의사항 및 본회의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필요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23조(위원회) 본회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편집위원회 등을 둘 수 있으며 위원회별로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24조(분과) 본회는 필요 시 산하에 연구 관련 분과를 둘 수 있다.

제5장 회 계

제25조(자산 및 경비) 본희의 수입은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생물 환경조절 분야와 관련된 생육조절, 생산시설 및 생산물 이용에 관한 연구 및 지식보급을 목적으로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본회의 자산 및 경비는 회원의 회비, 학술대회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6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회계보고) 본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6장 해 산

제28조(해산) 사단법인의 해산 사유가 발생하거나 총회의 의결에 의해 본회를 해산할 수 있다. 이때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이 없으면 개최하지 못하며,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9조(잔여재산의 처분)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되도록 하며, 공익을 위한다.

붙임 3]

사단법인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임원선출 규정

2007.05.11. 제정
2016.09.01. 개정
2020.06.26.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이하 본 학회라 함) 정관 제11조를 근거로 임원을 선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원의 구성)

본 학회는 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 감사 2명, 사무총장 1명, 운영이사 30명 이내를 포함한 이사 80명 이내의 임원을 둔다. 단,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업공학부장,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장, 한국시설원예협의회장의 3명은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제3조(임원의 자격)

① 회장은 선거공고일 기준 6년 이내 부회장을 역임한 정회원이어야 한다.

② 부회장, 감사 및 사무총장은 이사를 역임한 정회원이어야 한다. 단, 당연직은 예외로 한다.

제4조 (차기회장의 선출)

제1항(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① 본 학회의 차기회장 선출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함)를 둔다. 선관위는 현 학회의 회장 임기 종료 6개월 이전까지 구성을 완료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운영이사회에서 선출되며, 선출된 선거관리위원장은 5인 내외의 선거관리위원을 구성한다. 단, 사무총장은 당연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③ 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장의 감독을 받아, 선거일정 확정,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 명부의 작성, 선거 공고, 투표지의 발송 및 취합,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선관위는 당해 선거 업무가 끝나면 그 기능이 종료된다.

제2항(선출시기) 차기회장은 현 회장의 임기 종료 2개월 이전까지 선출한다.

제3항(피선거권자의 자격 및 후보자의 확정)

① 차기회장 후보자는 최근 6년 이내에 본 학회의 부회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

② 선관위는 피선거권자의 자격을 갖춘 자 전원에게 입후보 여부를 문의하여 후보자를 확정한다.

③ 차기회장 후보자격을 가진 입후보자는 입후보 소견서(학회 활동, 계획 등이 명시된 A4 1매 내외)를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선거권자의 자격) 본 학회의 현 임원으로 한다.

제5항(선거방법)

① 투표는 선거권자의 1인 1기표의 직접투표로 한다. 단, 직접투표의 구체적인 방식과 절차는 선관위에서 정한다.

② 선관위는 선거 일정을 선거 당해연도 8월 31일까지 회장단에 제출한다. 선거일정은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하되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정회원에게 사전에 공고해야 한다.

③ 투표기간은 투표 안내 발송일로부터 3주 이내로 한다.

제6항(당선자의 확정)

① 개표는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서 선거관리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 하에 실시한다.

②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정하며,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

③ 단독 후보의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당선자로 확정한다.

④ 차기회장이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회장단에서 추대된 자를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선출한다.

제7항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제5조(감사의 선출)

감사는 이사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6조(기타 임원의 선출)

부회장, 사무총장, 운영이사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선출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중요한 사항은 운영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